

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

채 권 자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주식회사◇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대표이사 ◇◇◇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채무자 1. ◈◈기계공업주식회사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대표이사 ◈◈◈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●●엔진공업주식회사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대표이사 ●●●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3. 주식회사■■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대표이사 ■■■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청구채권의 표시 : 금 ㅇㅇㅇㅇ아

1. 금 ㅇㅇㅇㅇㅇ원

집행력 있는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소○○○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임금채권의

원금 00000원

2. 금 ㅇㅇㅇㅇ원

제1항의 금액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.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

3. 금 ○○○원(집행비용)

내역: 금 ○○○원(신청서 첩부인지대)

금 ㅇㅇㅇ워(송달료)

금 ○○○원(집행문부여신청인지대)

4. 합계 금 ○○○○○원(1+2+3)

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

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

신 청 취 지

- 1.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채권은 이를 압류한다.
- 2. 제3채무자들은 위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각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위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한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소○○ ○ 임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가지는 채권인데, 채 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그 변제충당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이행권고결정정본 1통

1. 송달증명원 1통

1. 진술최고서 1통

www.klac.or.kr.ff.fg.
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



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

1. 제3채무자 ◈◈기계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,

청구금액 금 5,637,150원

채무자가 위 제3채무자 종업원들에게 구내식당식사를 제공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식사대금청구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.

1. 제3채무자 ●●엔진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,

청구금액 금 5,637,150원

채무자가 위 제3채무자 종업원들에게 구내식당식사를 제공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식사대금청구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.

1. 제3채무자 주식회사■■에 대하여,

청구금액 금 5,637,150원

채무자가 위 제3채무자 종업원들에게 구내식당식사를 제공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식사대금청구채권 중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. 끝.

				다. 사내한법國구조공단 火 火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 大
제출법원	※ 아래 참조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23 <i>조</i> 제1항	5, 제2: Manual (1)
제출부수	신청서 1부(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)			<u>-</u>
불복절차	·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, 제229조제6항)			
및 기간	・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			조제2항)
비 용	·인지액: 집행권원별로 4,000원 (압류 2,000원 + 추심 2,000원)			
	・송달료: 당사자수(채권자, 채무자, 제3채무자)×3,700원(우편료)×2회분			
기 타	•추심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, 사후에 신청			후에 신청
	할 수도 있음.			

	・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			
	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,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			
	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함(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다23888 판결).			
	·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,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			
	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			
	는 것이므로,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			
	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,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			
	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			
	하지 않음(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다73490 판결).			
	·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			
	우열이 없고,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			
	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			
	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			
	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			
	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,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			
참고판례요지	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			
	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			
	(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2000다43819 판결).			
	·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			
	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			
	료한 경우,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			
	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			
	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			
	것이니,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			
	있음(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7다34594 판결).			
	·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			
	이므로,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			
	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			
	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			
	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(대법원1997. 8.			
	26. 선고 97다4401 판결).			

- •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등 장생 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,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,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압류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,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,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,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음(대법원
- 참고판례요지
- ·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 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 니한 것이며,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 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,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,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 이며,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 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 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, 이러 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 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함(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다54300 판결).
- ·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,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(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2000다72589 판결).
- ※ 제출법원(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(민사집행법 제21조))

1997. 4. 25. 선고 96다10867 판결).

- 1. 채무자의 보통재판적(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)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)
- 2.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), 다만,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)
- 3.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)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